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

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 등이 발의한 「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」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제1항 및 「군포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0월 24일

군 포 시 의 회 의 장

1.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: 첨부 규칙안 참고

2.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

가. 제출기한 : 2022년 10월 28일까지

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, FAX

다. 제출내용

1) 규칙안에 대한 의견 (붙임 서식 참조)

2) 성명(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라. 제출기관 : 군포시의회 (참조: 의회사무과)

1) 주 소 :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

2) 전화번호 : 031-390-8738 FAX 031-392-4004

3) 전자우편 : career16@korea.kr

붙임 1. 의견서 서식 1부.

2. 규칙안 1부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조례명 :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규칙안 내용	찬성여부		의견	비고
	찬성	반대		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이동한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22. 10. .

발 의 자 : 이동한, 이길호, 신경원,
김귀근, 신금자, 이우천,
이훈미, 박상현, 이혜승

1. 제안이유

- 상임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관련 내용을 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의석 배정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(안 제3조제1항)
- 나. 의장의 겸직 제한 규정 정비 (안 제8조의 2)
- 다. 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
(안 제18조제1항, 안 제18조제3항)
- 라. 의안의 상임위원회 회부 규정 (안 제22조)
- 마. 의안의 특별위원회 회부 규정 (안 제22조의 2)
- 바. 위원회의 연석회의 규정 신설 (안 제57조의 2)

3. 관련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
-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

제8조의2제1항 중 “특별위원장”을 “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본문 중 “매년”을 “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제21조제1항 단서 중 “발의한다”를 “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”로 한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의안의 회부)”를 “(상임위원회 회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“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”를 “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

부의한다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.
제22조에 제2항 “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”를 “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,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.

제22조의 2부터 제22조의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 2(특별위원회 회부) 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2조의 3(심사기간) 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22조의 4(위원회 제출의안)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

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2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의 2(재회부)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제5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3조의 2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,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제5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7조의 2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의석배정)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배정한다. 다만,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	제3조(의석배정) ① <u>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.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.</u> ② <u>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의회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u>
제8조의2(의장의 겸직 제한) ① 의장은 부의장, <u>특별위원장</u>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. ② (생략)	제8조의2(의장의 겸직 제한) ① ----- 부의장, <u>위원장</u>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8조(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) ① 의장은 <u>매년</u>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연간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경우 해당연도 연간 기본일정을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제18조(의사일정의 수립 및 작성) ① -----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</u>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<신설>	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, 협</u>

③ (생략)

제21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2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2조(의안의 회부) 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서 심사·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.

②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21조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-----

----- 발의하며 위원회의
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
사항에 한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상임위원회 회부) ① ----

-----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
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
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한다. 다
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
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
있다.

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
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
지 않을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
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

③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의장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④ 제1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의장은 심사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,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.

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제22조의 2(특별위원회 회부) ①
의원의 동의를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

<신 설>

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
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
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
있다.

제22조의 3(심사기간) ① 의장
은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
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
기간을 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
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
지 아니할 때는 의장은 중간보
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
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
수 있다.

<신 설>

제22조의 4(위원회 제출의안) 위
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
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. 다
만,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
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
회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27조의 2(재회부) 본회의는 위
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
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
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
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
부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53조의 2(위원회의 제안) ①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, 기타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.

<신 설>

제57조의 2(연석회의) 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.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.

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.

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회의 회의로 한다.